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June 12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채널 제도와 맨섬: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관한 합의 선언](#)

#### OECD 의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프레임워크 이행에 대한 합의된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공동 성명서

영국 건지섬, 저지섬, 맨섬 정부는 OECD 의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프레임워크 이행에 대한 합의된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2025 년부터(2025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 연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대규모, 해당 다국적 기업에만 적용되는 소득 산입 규칙 (income inclusion rule)과 국내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지섬, 저지섬 및 맨섬에 소재한 최대 다국적 그룹(전 세계 매출이 연간 7 억 5 천만 유로 이상인 그룹)들에 속하는 회사들은 과세소득에 15%의 실효세율(글로벌 규칙에 따라 계산)을 적용하는 국내 조세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그러나 전 세계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대다수의 회사에는 해당 섬들의 0/10 법인세 제도가 계속 적용됩니다.

### 호주: 무형자산 계약에 관한 실무 규정 준수 지침 초안 업데이트

#### **무형자산 계약과 관련하여 업데이트된 실무 규정 준수 지침 초안(PCG 2023/D2)**

2023년 5월 17일, 호주 국세청(이하 'ATO')은 무형자산 계약과 관련하여 업데이트된 실무 규정 준수 지침(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이하 'PCG') 초안인 PCG 2023/D2 을 발표했습니다.

업데이트된 PCG 초안은 협의 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2년 전(2021년 5월)에 발표된 지침 초안 첫 번째 버전인 PCG 2021/D4 에 대한 협의에 따른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PCG 초안은 여전히 해외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무형자산 계약에 대한 ATO 의 규정 준수 접근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의 개발, 증진, 유지, 보호 및 활용(Development, Enhancement, Maintenance, Protection and Exploitation, 이하 'DEMPE') 과 관련된 국경 간 계약
- 무형자산의 이전

PCG 초안에서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는 위험 평가 프레임워크(Risk Assessment Framework, 이하 'RAF')입니다. PCG 2021/D4 에서 RAF 는 문서화 및 증거 수준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중심으로 네 가지 주요 위험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 상업적 고려사항 및 의사 결정
- 무형자산 계약의 법적 형식에 대한 이해
- 무형자산 및 관련 DEMPE 활동의 식별 및 입증
- 세금 및 수익 결과 분석

이는 업데이트된 PCG 초안에서 두 개의 RAF 표로 대체되었는데, 하나는 무형자산 이전에 적용되는 표이고 다른 하나는 (무형자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DEMPE 활동에 적용되는 표입니다.

- 계약이 호주 법인으로부터 이전된 무형자산과 구조조정 후 DEMPE 계약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경우, 두 가지 RAF가 고려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 RAF 표에 따라, 무형자산 계약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는 점수가 할당되어 계약은 "고위험", "중위험" 및/또는 "저위험" 등급을 받게 됩니다.
-

- 각 RAF 표의 위험 요소는 무형자산 계약의 경제적 및 세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평가하는 데에는 여전히 일정한 수준의 주관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 또한, RAF 표는 해외 특수관계인의 실체, 관련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및 세무적 특성(세금 손실 프로필 포함)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분석을 요구합니다.

ATO는 업데이트된 PCG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의견은 2023년 6월 16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0 부 1714, 2023.05.01

제목: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인지도가 높아 쟁점브랜드와 비교가능성이 낮은 해외브랜드를 유사사례로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대부분 수행하는 마케팅 업무를 쟁점법인이 수행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로 부적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자산수증이익 산정에 있어 쟁점브랜드의 가치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일부 재조사)

###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호텔 등을 운영하는 000 그룹의 계열사(이하 "DDD")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EEE 주식회사(DDD 대표이사인 bbb과 그의 아들 aaa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이하 "쟁점법인")가 2013.1.4.부터 2017.3.2.까지 출원·등록한 5개 상표(이하 "쟁점브랜드")에 대하여 2015년부터 브랜드가입비, 브랜드사용료(매출액의 1~1.5%, 이하 "쟁점브랜드사용료") 및 마케팅분담금(매출액의 1~1.4%, 이하 "쟁점마케팅분담금", 쟁점브랜드사용료와 합하여 "쟁점브랜드수수료"라 함) 명목으로 지급함
- 조사청은 청구법인 등에 대해 2016~201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FFF가 주식회사 GGG에 지급한 'HHH' 호텔 브랜드의 사용료율(매출액의 0.22%)을 적용한 가액을 쟁점브랜드사용료의 시가로 보고, 쟁점법인이 쟁점브랜드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마케팅분담금의 시가로 보아 그

차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

-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와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6사업연도 ~ 2018사업연도분 합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쟁점

-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브랜드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초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수증이익을 재산정하여 관련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3) 청구법인 및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p>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산정방식에 따르지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청이 쟁점브랜드사용료의 시가로 제시한 FFF와 GGG 간의 HHH호텔 브랜드 수수료율(0.22%)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가 아님</li> <li>- 처분청이 쟁점마케팅분담금의 시가로 제시한 용역제공원가의 5% 가산하는 방식은 근거가 없고, 원가에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용역거래에 대한 수익률을 적용한 것도 아니므로 시가가 아님</li> <li>- 청구법인은 2015년~2019년 외국계브랜드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객실매출'의 7% (브랜드 수수료3%+마케팅분담금4%)를 브랜드 수수료로 지급(기타수수료 4.7% 별도)한 것을 고려하면 쟁점수수료율이 고가거래가 아님</li> <li>- 제3자간의 거래가 없다면, 감정가액을 적용해야 함. 쟁점법인은 2017년 쟁점브랜드 감정평가를 통해 쟁점브랜드사용료의 적정효율은 객실매출액의 4.5%, 마케팅분담금의 적정효율은 객실매출액의 1.5%로 평가되어, 이는 쟁점수수료율보다 높음</li> <li>- 쟁점법인이 마케팅조직 인건비 및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브랜드개발업무에 관여한 점,</li> </ul>	<p>1)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그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쟁점브랜드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DDD에 귀속되고, 쟁점법인은 마케팅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DD가 외주업체와 쟁점브랜드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관련인들도 쟁점법인이 브랜드 개발 또는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또한, 쟁점법인의 임직원 수, 자산규모 등 고려 시 쟁점브랜드를 개발역량이 없으며, 관련 계약서/품의서 등이 사후 수정 또는 소급 작성됨.</li> <li>➢ 이에 대해 2019년 계열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함. 법원은 쟁점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귀속시킨 것으로 판단함.</li> <li>➢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브랜드를 출원·등록한 사실은 인정하여 브랜드가치를 산정함</li> </ul> </li> <li>-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거래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시가는</li> </ul> </li> </ul>

<p>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주일가는 급여/배당을 받지 않고 2018년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에 증여한 점을 보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수단이 아님</p> <p>- DDD가 외주업체 간에 수수한 브랜드 개발비용은 기업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침체된 건설경기 극복을 위한 컨설팅비용이므로, 쟁점 브랜드 개발비용이 아님. 쟁점법인 또한 쟁점브랜드 개발을 위해 동 외주업체 및 브랜드 개발 기획사들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함</p>	<p>특수관계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의 대등한 관계 또는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거래 실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p> <p>➢ HHH호텔은 국내 체인호텔로, GGG가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였으나, 특별한 광고 활동을 하지 않고, 사용자인 FFF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등, 거래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감정가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됨</p> <p>➢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높은 해외 체인호텔의 경우(5%)이며,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을 수행함을 전제로 책정됨</p> <p>➢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국계브랜드사 향 객실매출의 7%(기타 4.7%)를 시가로 할 경우, 특수관계거래 수수료가 시가보다 낮게 거래된 저가거래이므로 이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임</p>
<p><b>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율을 적정수수료율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2018 사업연도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며 쟁점브랜드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감액경정해야 함</b></p> <p>- 쟁점브랜드의 평가액은 2017년 감정평가를 통해 000원(브랜드로열티율은 객실매출의 4.5%, 마케팅수수료율은 객실매출의 1.5% 반영)으로 평가됨. 청구법인은 증여된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p> <p>- 즉, 쟁점주식 평가액에 쟁점브랜드 가치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적용한 수수료율을 적용 시 쟁점브랜드가치는 음수(-)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가 환급되어야 함</p>	<p><b>2) 2018 사업연도의 자산수증이익은 이 건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음</b></p> <p>- 청구법인이 계상한 자산수증이익은 상표권 자체의 가치를 평가한 것인 데 반해, 이 건 처분은 상표권의 "사용가치"에 대한 다툼이므로 관련이 없음</p> <p>- bbb는 고발을 면하고자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는 바, 쟁점브랜드 가치가 과다평가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별도로 경정청구하여 다투어야 할 것임</p>

#### 4) 판단

- 쟁점 ①: 쟁점브랜드는 2012년 DDD의 사주 bbb의 지시로 DDD과 외주업체 사이의 연간계약에 기초하여 DDD의 비용으로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은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 등은 공정거래 리스크를 감안하여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에 따라 브랜드 제안서, 계약서, 내부품의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브랜드수수료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수수료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법인의 감정가액은 해외브랜드를 유사사례로

적용하고, 쟁점법인이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시가로 적용하기는 부적절해 보이고, 이 외 별도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HHH호텔 브랜드 감정사례는 쟁점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 수수료율이 국내 체인호텔 브랜드 사용요금(매출액의 0.12~0.3%) 범위 내에 있어 비록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쟁점 ②: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되는 측면도 있어 보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브랜드 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 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브랜드 감정평가자료는 객실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수수료 산정체계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브랜드 가치산정 시 적용된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브랜드의 자산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03 관세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 1) 고시 개정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통제 강화 및 국제정세 변화에 발 맞추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및 공포하였음.
-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질, 장비, 부품 등을 말하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금번 개정의 경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러시아, 벨라루스向 수출품에 대한 수출통제 대상 품목 확대 주된 목적에 해당함.  
\* 전략물자 수출시 관련 제반 절차에 대한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의 목록(고시 상 “가 지역”)

#### 2)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 2019년 정치 외교적 이유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으나, 금번 고시 개정에 따라 일본을 고시 상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복원하였음.

- 이에 따라 일본向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인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관련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가의 1 지역"	"가의 2 지역"	"가 지역"으로 통합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 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u>일본</u> 등 29 개국

**[허가 심사절차 관련 개정사항]**

구분	종류	개정 전	개정 후
심사기간	개별 수출허가	15 일	5 일
	포괄 수출허가		
신청서류	개별 수출허가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5 종	허가신청서 등 종
	포괄 수출허가	최종수하인진술서 등 3 종	허가신청서

**3)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2023년 4월 27일 (금) 0시부터 해당 상황허가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向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출 이후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서,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수출 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의미함.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관련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 전자, 조선 등 57 개 품목	· <b>(좌동)</b> 전자, 조선 등 57 개 품목  · <b>(신설)</b> 산업·건설기계, 철학·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 만불 초과시),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 개 품목

### [KPMG 의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통제 강화 및 상황허가 품목 대거 추가에 따라 러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여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특히 수출품의 HS Code 만으로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HS Code 는 참조만 하되 관련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사전 판정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함.



## Key Contacts

###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